
韓國裝身具의 奢侈禁制 考察

A Study on Luxury Prohibition of Korean Personal Ornaments

● 秋 園 教

漢陽女子專門大學 應用美術學科

● Won-Gyo. Choo

Han-yang Women's Junior College

ABSTRACT

The luxury is the expression of human being's ornament instinct. In this study, in order to grasp the moulding system of the Korean's personal ornaments, the process of luxury prohibition was reviewed to search for to which direction the ornaments developed in the frame of the prohibited style connected closely to the character of the personal ornaments. The period was fixed from the old society to the late Chosun dynasty era. The beginning of the luxury in Korea seems to be the start of the luxury burial at the time of funeral in the age of Koguryo., In the era of Koguryo, 10th year of King Dongmyung (B. C. 28), in the era of Baekje, 27th year of King Koi(260), the prohibition of dress regulation and the style of dress were conducted. The prohibition of personal ornaments in Silla was started from King Bup-Heung, and in the 9th year of King Heung-Duk, the prohibition was conducted in order to correct the luxury of the nobles and set up the social discipline. In the 11th of King Il-Sung-Ni-Sa-Kum, the use of gold, silver and jade was prohibited in the civilian circles.

The prohibition of Silla was succeeded to Koryo era, and in the 7th year of King Kwangjong(956), the system of Baekgwan Gongbok(uniform for government officials) was set up, and the system of Sasek Gongbok(four color official uniform) was set up in the 11th year of the same King, and the prohibition of the personal ornaments such as crown and band is considered to have been conducted. The prohibition of gold and silver was conducted in the first year of King Sungjong(982), and in the 4th year of King Chungryul(1260), the order of wearing the dress and hat in accordance with the Yusan dynasty and the Mongolian customs were widely circulated in the royal court and civilian circles. The strong influence of Mongolia made the taste of the traditional personal ornaments laste. The personal ornaments were used for the nobles until the age of the Unified Silla but even the common people could use them in case they were rich, and such a circumstances made the use of foreign goods inflated. The prohibition of Koryo era was aimed at the prohibition of the foreign goods of luxury, and the classification of the social status.

In the age of Chosun Dynasty, the production of gold and silver was feeble indeed but the outer reason of the prohibition was to eradicate the luxurious tendency, elevate the custom of eradicate the luxurious tendency, elevate the custom of thrift, and moreover, the gold, silver and jade were not the products of Korea and the prohibition was conducted but the true reason was for the tribute to China and the classification of status.

The prohibition of Chosun dynasty was conducted first in the June of the 3rd year of King Taejo. The major contents of prohibition was no use of gold, silver and jade, coral, agate, amber, etc. of the wives of the Dang-Sang-Kwan (Court Nobleman) or their sons and daughters, and the same phenomenon was common even at the time of marriage. The people engaged in the secret trade there of were beheaded. The personal ornaments in the prohibition were the pendent trinket, Binyo (crossbar) ceremonial ornamental hat, ring, earring, ornamental knife, hat string, hat ornament, belt, etc. The luxurious marriage expenses out of the luxury was severe, and loss of the marriageable age because of non-preparing the marriage goods was the national evil. The prohibition of luxury was hard to be kept to the nobles or rich people, the same as old days and present days. The prohibition of the luxury and personal ornaments of Korea had nothing to do with the commons, and it was limited to the nobles and rich people. The prohibition was aimed to cultivating the custom of frugality by eradicating the luxurious atmosphere, but it was chiefly due to the tribute to the China and the discrimination of the status. We can say that the recent personal ornament was the flower of handicraft industry bloomed in the prohibition and regulation.

I. 序 論

金·銀은奢侈의 근원이며, 奢侈란 人間의 裝飾本能을 채우려는 空白恐怖(Horror of Vacuum)¹⁾의 행위이다.

朝鮮은 産金國이라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中國에 歲時와 慶節에는 항상 禮儀를 표하러 가는 使信들이 가지고 가야할 禮物도 金銀珠寶이었다. 그러나 金銀의 產出量은 적고 需要量은 많아서 그 폐해가 적지 않았다. 新羅 興德王 9年 服飾禁制令을 내렸는데 “사람에게는 上下가 있고 地位는 尊卑가 있어 名稱과 法式이 같지 않고 의복도 다르다. 그런데 風俗이 점점 천박하고 백성들은 다투어 奢侈와 호화를 일삼고 다만 外來品の

珍奇한 것만을 숭상하고 도리어 土産物을 속되고 천하다 하여 싫어하며 분수를 지나쳐 禮儀에 거슬리고 風俗이 쇠락하여 가고 있다. 이에 옛법을 따라 嚴命을 베푸는 것이니 그래도 만일 일부러 범하는 자가 있으면 國法을 시행할 것이다”²⁾고 하였다. 그러나 尊卑의 구별과 外來品 使用에 경계를 내리고자 하는 것이 禁制令의 의도라 하였지만 본뜻은 당시 혼돈스러운 사회적 기풍의 쇠신에 있었다. 興德王 때가 禁制의 처음이나 그 이전 法興王 때에도 冠制에 대한 규제가 있었다. 高麗時代에는 金銀의 事大進貢이 어려워 정포은(鄭圃隱)이 中國에가 銀을 貢物로 바치기가 어려우니 銀의 수량을 훨씬 줄이고 다른 土産物로 바치도록 주청(奏請)하였다.³⁾ 그렇지만 事大歲貢은 계속 되어오다가 끈질긴 외교교섭으로 朝鮮朝 世宗 12年

1) Read Herbert, 「Art and Industry」, 鄭時和譯, (서울:美進社, 1979), p.49.

2) 「三國史記」卷第33, 雜志 第2色服.

“人有上下, 位有尊卑, 名例不同, 衣服亦異, 俗漸澆薄, 民競奢華, 只尚異物之珍奇, 却嫌土產之鄙野, 禮數失於過僭, 風俗至於陵夷, 故率舊章, 以申明命, 苟或故犯國有常刑.”

3) 李 瀆, 「星湖塞說」, 第5卷, 萬物門.

에야 金·銀 대신에 土産物로 바칠 것을 허락받았다. 朝鮮의 歷史는 실로 대외의 歷史, 그것도 事大를 어쩔 수 없이 강요당한 역사였다.⁴⁾ 이렇게 中國의 눈치를 살피며 金銀을 사용해야 되는 현실에 裝身具와 鑲業의 발달은 무디어갔다. 그렇지만 奢侈禁制는 新羅의 法興王에서부터 朝鮮末까지 나타나는데 奢侈規制의 어려움을 짐작케 한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韓國人의 裝身具 造形性을 파악키 위한 일환으로 奢侈禁制가 裝身具 발달에 어떠한 작용을 하였으며, 禁制속에서 裝身具는 어떻게 脈絡을 形成하면서 變貌하였는지를 考察하여 韓國 裝身具 研究의 새로운 基層을 마련코자 한다. 資料는 史의 文獻을 中心으로 하였고, 기간은 古代社會에서 朝鮮末期까지로 설정하였다.

II. 古代社會의 奢侈禁制

韓國의 古代社會 文物은 中國의 영향을 배제시킬 수 없다. 箕子朝鮮의 衣冠制度는 모두 中國과 같았다⁵⁾고 하는 것은 韓國人의 初期 衣冠을 말하는 것으로 韓國은 中國과 交流도 있었으나 점진적으로 韓國人 나름대로 독자적인 土俗樣式으로 발전되어 갔을 것으로 짐작된다.

文化란 항상 外來의 收容만으로 발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생활환경속에서 自生的으로 독자적인 문화가 배태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新羅의 脫解王을 冶匠出身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古代社會에서 金屬器物의 사용계층은 극소수의 지배층에 속하는 사람들로 당시에 金屬은 보편적인 생활용품이 될 수 없었다. 金屬製 器物이 특수층의 전유물이었다는 사실

은 慶州 雁鴨池 발굴자료에서 실증된 바 있다.⁶⁾

三國時代이전에 扶餘에서는 金·銀으로 모자를 장식하였으며 三國時代의 物産에도 금속·가죽·직물 등을 기본으로 한 많은 기구·의료가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건데 비록 일반화된 것은 아니었다더라도 특수한 목적을 위한 裝身具가 부수적으로 발달되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⁷⁾ 馬韓사람들은 구슬을 보배로 여겨서 혹은 옷에 매달아 裝飾을 하거나 혹은 목에 달거나 귀에 늘어뜨리기도 하였다. 그런 때문에 金銀이나 金鑲를 보배로 생각하지 않았었다.⁸⁾ 오늘날의 裝身具에서 金銀을 高價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태초의 價値觀과 차이를 접하게 된다.

「北史」에 이르기를 高句麗는 귀인의 관(冠)을 소골(蘇骨)이라 하는데 자라(紫羅)를 많이 써서 이를 만들고 金銀으로 장식하며 대수삼(大袖衫: 저매가 큰 저고리)과 대구고(大口袴: 통이 넓은 바지)를 입는다. 부인은 군유(裙襦)에 선(褌)을 더한다고 하였는데⁹⁾, 高句麗의 풍속은 음란하여 남자가 혼인만 하면 곧 죽어서 장사지낼 때 입을 옷을 만들어 두었다. 후장(厚葬)하는 까닭으로 금·은·동·페백 등을 송사(送事)를 위해 탕진하였다.¹⁰⁾ 規制로는 東明王 10年(B.C. 28) 서인(庶人)은 문채있는 옷과 비단옷의 착용을 금하였다.¹¹⁾

百濟는 「北史」에 이르기를 의복은 高句麗와 대략 같다 하였으며, 「唐書」에는 百濟의 君臣들의 옷은 강의(絳衣)이고 冠은 은위(銀莢)로 장식하였으며 백성에게는 강자(絳紫)의 옷을 금한다¹²⁾고 하였다. 百濟는 古爾王 27年(260)에 관위 16品을 정하고 공복을 정하였는데 平民에게는 「禁絳紫」하였다. 百濟

4) 柳宗悅, 「韓國과 그 藝術」, 李大源 譯, (서울: 知識産業社, 1974), p. 27.

5) 「增補文獻備考」, 第79卷, 禮考 26, 章服 1.

6) 李宗碩, 「韓國의 木工藝」, (서울: 悅話堂, 1986), p. 245.

7) 맹인재, 「한국의 민속공예」,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9), p. 232.

8) 「三國志」卷30, 魏書 東夷傳 第30, 馬韓條.

“以瓔珠爲財寶, 或以綵衣爲飾, 或以縣頸垂耳, 不以金銀鑲爲珍”

9) 「增補文獻備考」, 第79卷, 禮考26, 章服 1, 高句麗條.

10) 「三國志」, 卷30, 魏書, 東夷傳 第 30, 高句麗條.

其俗淫, 男女已嫁娶, 便稍作送終之衣, 厚葬金銀財幣盡於送死”

11) 「增補文獻備考」, 第80卷, 禮考27 章服2, 高句麗條.

12) 「增補文獻備考」, 第79卷, 禮考 26 章服1, 百濟條.

는 三國중에서 가장 일찍기 服裝制度를 色으로 구별하였다.¹³⁾ 高句麗와 百濟에서는 史料에 의하면 禁制라기 보다는 規制였다.

新羅 興德王 9년에 정한 制度中 裝身具에 관한 禁制內容은, 眞骨의¹⁴⁾ 大等¹⁵⁾의 腰帶는 研文白玉을 금하고, 靴帶는 隱文白玉을 금한다. 眞骨女人의 鬘(梳)은 瑟瑟鈿(碧色の 首飾用)과 玳瑁를 금하고 비너는 刻鏤(아로새긴 것)와 綵珠(구슬을 꿰것)을 금하며 冠은 瑟瑟鈿을 금한다.

六頭品은 띠는 烏犀(검은 물소뿔)·鎌·鐵·銅을 사용하고 靴帶는 烏犀·鎌·鐵·銅을 사용한다. 六頭品女人은 띠는 金銀絲나 孔雀尾·翡翠毛로 끈을 만든 것을 금하고 빛은 瑟瑟鈿을 금하며 비너는 純金에 아로새긴 것과 구슬로 꿰것을 금한다. 冠은 總羅·紗羅를 사용한다.

五頭品은 腰帶는 鐵만을 사용하며, 靴帶는 鎌·鐵·銅을 사용한다. 五頭品女人은 띠는 金銀絲·孔雀毛·翡翠毛로 끈하는 것을 금한다. 빛은 素玳瑁이하를 사용하며 비너는 白銀이하를 사용하고 冠이 없다.

四頭品은 腰帶는 鐵·銅만을 쓰고 靴帶도 鐵·銅만을 사용한다. 四頭品女人은 빛은 素牙·角木을 사용하며 비너는 아로새기거나 구슬로 꿰것과 純金을 금하고

冠이 없다.

平人은 띠를 銅·鐵을 사용하고 靴帶는 鐵·銅만을 사용하고 平人女人은 띠는 綾絹이하를 사용하며 빛은 牙角이하를 사용하고 비너는 鎌·石이하를 사용하였

이상에서 살펴보면 腰帶에 玉·銀·銅·鐵의 사용을 별 하였으며 璽骨계통을 제외하고는 복장이나 裝身具서 制限을 받고 禁止를 당하였다. 그렇지만 興德王 禁令을 내리기전 벌써 公복제도도 실시할 무렵 계급 따라 금관, 비관, 조영을 사용하는데 규정을 지었으 사실상 新羅의 裝身具 規制는 法興王때부터 시행되었 당시 新羅에서는 金·銀의 국내수요도 많았을 뿐더 對唐輸出品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金을 이용한 金銀泥·金銀絲를 服飾禁制令에서 금하였는 것은 奢侈 禁壓이라는 면보다 身分의 上下와 尊의 等位를 가리기 위한 것이 主目的이었다.¹⁸⁾

新羅는 裝身具뿐만 아니라 일반 器物에도 金屬製흔히 사용했는데, 「舊唐書」에도 食器는 버드나무 만든 술잔과 구리 기와로 만든 것을 썼다¹⁹⁾고 한다. 그리고 末期에 갈수록 禁制事項이 많아진다.

맨처음 나타난 기록으로 逸聖尼師金 11년 2월에 올 내려 農은 政事의 근본이요 食은 백성이 하늘로 기는 것이니, 諸州郡은 堤防을 修築하고 田野를 闢

13) 黃奭根, 「韓國裝身具史」(서울:瑞文堂, 1972), p. 108.

관위에 따른 규제내용은, 6품이상: 服紫以銀花飾冠, 11품이상: 服靑, 16품: 服靑, 7품: 紫帶, 8품: 早帶, 9품: 赤帶, 10품: 靑帶, 11~12품: 黃帶, 13~16품: 白帶

14) 신라때의 骨品제도의 하나로 둘째 등급으로 양친(兩親)가운데 어느 한편만이 王族의 血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 신라때 귀족계급에게 주어진 중요한 벼슬 자격은 眞骨(眞骨)이상의 귀족에 한하였으며, 和백(和白)에 참가하여 중요한 국사를 의논하였다.

16) 「三國史記」卷第33, 雜誌第2 色服 新羅條. 「增補文獻備考」禮考26, 章服1 臣服條. 石宙善, 「韓國服飾史」(서울:寶晉齋, 1986), pp. 26~28. “眞骨, 腰帶禁研文白玉, 靴帶禁隱文白玉 眞骨女, 梳禁瑟瑟鈿玳瑁, 釵禁刻鏤及綵珠. 冠禁瑟瑟鈿 六頭品, 帶只用烏犀 鎌鐵銅, 靴帶用烏犀 鎌鐵銅, 六頭品女, 帶禁以金絲孔雀尾翡翠毛爲組, 梳禁瑟瑟鈿, 釵禁純金以銀刻鏤及綵珠, 冠用 總羅紗絹, 五頭品, 腰帶只用鐵, 靴帶只用鎌鐵銅, 五頭品女, 帶禁以金銀絲孔雀尾翡翠毛爲組, 梳用素玳瑁已下, 釵用白銀已下, 無冠. 四頭品, 腰帶只用鐵銅, 靴帶只用鐵銅, 四頭品女, 梳用素牙角木, 釵禁刻鏤綴珠及純金, 無冠. 平人, 帶只用銅鐵 靴帶只用鐵銅 平人女, 帶只用綾絹已下, 梳用素牙角已下, 釵用鑰石已下.”

17) 黃奭根, 前掲書, p. 133.

18) 柳喜卿, 「韓國服飾史研究」(서울:梨花女子大學校出版部, 1977), p. 561.

19) 「舊唐書」卷199, 上·列傳 第149, 東夷條 “其食器用柳括, 亦以銅及互”.

開拓하라 하였으며, 또 솜을 내리어 民間에서 金銀珠玉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였다.²⁰⁾ 器用品에 있어서는 眞骨은 金·銀·鍍金의 사용이 금지되고, 六頭品과 五頭品은 金·銀·鍍金·鍍銀의 사용이 금지되고, 또 범가족 무늬있는 毛織物, 털자리 등이 금지되었다. 四頭品에서 百姓까지는 金·銀·鍍石·朱裏·平文物이 금지됐고 또 무늬있는 毛織物·털자리·범가족·唐製털자리 등이 금지되었다.²¹⁾

新羅의 車騎에 관한 禁制는,

眞骨은 수레에 사용하는 材木은 紫檀 沈香을 쓰지 않고, 玳瑁를 붙이지 못하며, 또 감히 金銀과 玉으로 장식하지 못한다. 車의 요(褥)는 綾絹이하를 쓰고, 두걸을 지니지 못하며 자리는 鈿錦과 2色 綾이하를 쓰는데, 가장자리는 錦이하를 사용한다. 前後의 휘장은 작은 무늬의 綾·紗·縹를 이하를 쓰고 色은 深靑碧·紫紫粉으로 하며, 絡網(輿服의 일종인 絲網)은 絲麻를 쓰고 色은 紅緋翠碧으로 하고 粧表는 또한 絹布를 사용하고 色은 紅緋·靑縹(색옥)으로 한다. 牛勒(소 굴레)과 鞅(말고삐)은 縹·絹布를 쓰고, 고리는 金·銀·鍍·石을 금하며, 步搖(걸을 때 흔들리는 장식)도 金·銀·鍍·石을 금한다.

六頭品은 요는 縹·絹이하를 쓰고, 자리는 縹·絹·布를 쓰는데 가장자리가 없다. 前後의 휘장은 眞骨이상 貴人을 따라갈 때에는 치지않고, 혼자서 갈때에만 竹簾(대밭)이나 莞席(왕골자리)을 사용하며 縹·絹이하로 가장자리를 두른다. 絡網은 베를 쓰되 色은 赤靑으로 하며 牛勒 및 鞅은 베를 쓰고, 고리는 鍍·銅·鐵을 쓴다.

五頭品은 요는 靛(전)이나 베만을 쓰고, 前後의 휘장은 대밭이나 왕골자리만을 쓰며, 가죽이나 베로 가장자리를 두른다. 굴레는 없고, 고삐는 麻를 쓰며, 고리는 木·鐵을 쓴다.

眞骨의 鞍橋(다리모양의 안장)는 紫檀·沈香의 사용을 금하고, 鞍轡(안장언치)은 縹·縹錦羅를 금하며

안장자리도 縹·縹羅를 금하고 障泥(馬具의 흠반이)는 단지 麻油를 써서 染色한다. 재갈과 鐙子(등자)는 金·鍍·石과 鍍金과 綴玉의 사용을 금하며, 鞞(고삐)는 실로 짠것과 자색 줄 끈을 금한다. 眞骨女의 鞍橋는 寶鈿을 금하며 안장언치와 안장자리는 縹羅를 금하고 고삐는 金銀絲로 섞어 짠것을 금한다.

六頭品의 鞍橋는 紫檀·沈香·黃楊·槐·柘(자, 산뽕나무)와 金銀·綴玉의 사용을 금하며, 안장언치는 가죽을 쓰고 안장자리는 錦紬·縹布·가죽을 쓴다. 障泥는 麻油를 써서 染色하고, 재갈·등자는 金·銀·鍍·石과 渡金銀·綴玉의 사용을 금하며 고삐는 가죽과 삼(麻)를 쓴다. 六頭品女人의 鞍橋는 紫檀·沈香의 사용과 金으로 싸고 玉으로 꿰는 것을 금하며 안장언치와 안장자리는 縹·縹羅·縹羅를 금하고 替脊은 綾·縹·絹을 사용한다. 재갈·등자는 金·銀·鍍·石을 사용하거나 金銀칠 하고 玉을 꿰는 것을 금하며, 흠반이는 가죽을 쓰고 고삐는 실로 짠것을 쓰지 않는다.

五頭品의 鞍橋는 紫檀·沈香을 금하고 또한 金銀·綴玉을 하지 못하며 안장언치는 가죽을 쓰고 흠반이는 麻油를 써서 染色한다. 재갈·등자는 金·銀·鍍·石을 금하고 또 金銀으로 칠하거나 새기지 못하며 고삐는 麻를 사용한다. 五頭品女人의 鞍橋는 紫檀·沈香을 금하고, 또 金·銀·玉의 사용을 금하며 안장언치와 안장자리는 縹·縹羅·縹羅·虎皮를 금하고 재갈·등자는 金·銀·鍍·石을 금하며 또 金銀으로 장식하는 것을 금한다. 흠반이는 가죽을 사용하고, 고삐는 실끈으로 짜는 것과 紫紫粉으로 광채있게 두른 실끈을 금한다.

四頭品에서 백성에게 이르기까지의 鞍橋는 紫檀·沈香·黃楊·槐·柘의 사용을 금하고 또 金·銀·玉으로 장식하는 것을 금하며 안장언치는 소와 말 가죽을 쓰고, 안장의 요요는 가죽을 쓴다. 흠반이는 楊竹을 쓰고 재갈은 鐵을 사용하며 등자는 나무와 쇠를 사용하며 고삐는 힘줄이나 삼(麻)로 잡아맨다. 四頭品女人에서 百姓女人에 이르기까지의 鞍橋는 紫檀·沈香·黃楊·

20) 「三國史記」卷1,

“下命，農者政本，食惟民天，諸州郡修完堤防，廣野田野 又下命，禁民間用金銀珠玉。”

21) 李瑄根, 「韓國民族思想大系」, 2. 古代編, (서울: 螢雪出版社, 1982), p. 107.

〈丑-1〉新羅 興德王 服飾禁制에 나타난 裝身具 構造

	眞骨大等	眞骨女	六頭品	六頭品女	五頭品	五頭品女	四頭品	四頭品女	平人	平人女
冠帽	幘頭任意	冠禁瑟瑟細	用總羅絹布	冠用總羅紗絹	幘頭用羅總絹布	無冠	幘頭用施絹布	無冠	幘頭用絹布	○
襪	○	禁(廢)羅用金銀絲孔(孔)瑟瑟毛	○	禁(廢)羅錦羅、金銀泥	○	用綾	○	用絹	○	○
腰帶	禁研文白玉	○	用烏犀鍮鐵銅	禁金銀絲孔(孔)瑟瑟毛爲組	用鐵銀	同六頭品女	同鐵銅	禁總羅野草羅乘天羅越羅用綿袖已下	用銅鐵	用綾絹已下
褙	○	○	○	○	○	禁(廢)羅錦羅	○	用越羅	○	用綾已下
襪	用綾	同內衣	用純綿袖布	禁(廢)羅錦羅總羅野草羅	用錦袖	同六頭品女	○	用小紋綾純綿袖布	○	用純袖已下
襪幼	○	○	○	禁(廢)羅總羅	○	禁(廢)羅錦羅總羅	○	用小文綾	○	用無文
靴	禁紫皮	○	禁烏犀鍮鐵文紫皮	○	同六頭品	○	同五頭品	○	同四頭品	○
靴帶	禁隱文白玉	○	用烏犀鍮鐵銅	○	用鍮鐵銅	○	用銅鐵	○	用銅鐵	○
履	用皮絲	同內衣	用皮麻	禁(廢)羅錦羅總羅	用皮麻	用皮已下	用牛皮已下	○	用麻已下	○
釵	○	禁刻鑲綴珠	○	禁純金以銀刻鑲及綴珠	○	用白銀	○	○	○	用鍮石
梳	○	禁瑟瑟細斑瑠	○	禁瑟瑟細	○	用素玳瑁	○	○	○	用素牙角

槐木의 사용을 금하고, 또 金·銀·玉으로 장식하는 것을 금한다. 안장언치와 안장자리는 鍮鐵錦羅·總羅·綾과 虎皮를 금하고 재갈과 등자리는 金·銀·鍮·石을 금하며 또 金銀 장식을 금한다. 흙반이는 가죽을 사용

하고, 고베는 실로 짠것이나 紫紫粉으로 광채있게 두른 실끈을 금한다.²²⁾

新羅의 家屋에 관한 禁制는,

眞骨은 金·銀·鍮·石과 五色으로 장식하지 않는다.

六頭品은 金·銀·鍮·石·白鐵과 五色무늬로 장식하지 않는다. 五頭品은 金·銀·鍮·石·銅·鐵과 五色무늬로 장식하지 않는다. 四頭品은 金·銀·鍮·石·銅·鐵로 장식하지 않는다.²³⁾

統一新羅時代に 이르면 古墳出土品에 金銀裝身具가 줄어들어 이 시대의 金屬工藝品은 佛敎工藝品에 그치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遺物을 전하는 상태가 달라졌을 뿐이며 金屬工藝 자체가 쇠퇴한 것은 아니다. 즉, 統一新羅時代의 유적이 주는 성격에 따라 출토유물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을 따름이다.²⁴⁾ 末期에 이른 哀莊王 7년에도 왕은 佛寺의 새로운 창건을 금하고 수리만을 허락하였으며 또 綿繡를 짓거나 金銀으로 器用을 만드는 것을 금하여 官吏로 하여금 널리 布告 施行케 하였다.²⁵⁾ 날로 증가해가는 金銀奢侈品의 수요를 감당하기가 新羅末期에 이르러서는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Ⅲ. 高麗社會의 金銀禁制

高麗時代의 전래되는 裝身具에 관한 文獻과 遺物이 희귀하여 답답한 감을 감출길 없다. 高麗時代에는 元의 影響力이 막강해지기 이전만해도 新羅의 유습되는 裝身具를 그대로 사용했으나 元의 勢力으로 傳統의 裝身具의 멋은 퇴색되었다. 統一新羅까지만 해도 金屬工藝品은 일부 貴族層에서만 쓰였는데 高麗와 朝鮮時代로 내려오면서 차츰 일반에게까지도 넓게 쓰여지기 에 이르렀다.²⁶⁾

光宗 7년(956)에 百官 公服을 中國의 제도(華制)에 준하도록 하였는데 冠帶 등 裝身具도 이에 따라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기록이 없으며 더욱 光宗 11년(960)에 四色公服을 제정하였으니 역시 冠帶 등 裝

22) 「三國史記」, 卷第33, 雜誌 第2 車騎條.

「增補文獻備考」第80卷, 禮考27 章服2 雜服條.

“眞骨, 車材不用紫檀沈香, 不得帖代瑁, 亦不敢飾以金銀玉 褥子用綾絹已下, 不過二重, 坐子用細錦二色綾已下, 緣用錦已下, 前後轆用小丈綾紗纈已下, 色以深青碧紫紫粉. 絡網用絲麻, 色以紅緋翠碧, 粧表且用絹布, 色以紅緋青縹. 牛勒及鞅用絢絹布, 環禁金銀鍮石, 步搖亦禁金銀鍮石.

六頭品, 褥子用纈絹已下, 坐子用纈絹布, 無緣, 前後轆若眞骨已上貴人行則不設, 但自行則用竹簾莞若莞席, 緣以纈絹已下, 絡網用布, 色以赤青, 牛勒及鞅用布, 環用鍮銅鐵. 五頭品, 褥子只用氈若布, 前後轆只用竹簾莞席, 緣以皮布, 無勒, 鞅用麻, 環用木鐵.

眞骨, 鞍橋禁紫檀沈香, 鞍轆禁縹緋羅, 鞍坐子禁紫縹羅, 障泥但用麻油染, 銜鐙禁金鍮石鍮金綴玉, 鞞鞅禁組及紫條. 眞骨女, 鞍橋禁紫細, 鞍轆鞍坐子禁縹羅, 脊雜禮一脊云禁縹羅, 銜鐙禁縹金綴玉, 鞞鞅禁雜金銀絲組. 六頭品, 鞍橋禁紫檀沈香黃楊栝及金綴玉, 鞍轆用皮, 鞍坐子用錦絢布皮, 障泥用麻油染, 銜鐙禁金鍮石及鍮金綴玉, 鞞鞅用皮麻.

六頭品女, 鞍橋禁紫檀沈香及縹金綴玉, 鞍轆鞍坐子禁縹羅羅羅羅, 脊脊用綾 絢絹, 銜鐙禁金鍮石及鍮金綴玉, 障泥用皮, 鞞鞅不用組.

五頭品, 鞍橋禁紫檀沈香黃楊栝, 亦不得用金綴玉, 鞍轆用皮, 障泥用麻油染, 銜鐙禁金鍮石, 又不得鍮鍮金銀, 鞞鞅用麻.

五頭品女, 鞍橋禁紫檀沈香, 又禁飾以金綴玉, 鞍轆鞍坐子禁縹羅羅羅羅虎皮, 銜鐙禁金鍮石, 又禁飾以金銀, 障泥用皮, 鞞鞅禁組及紫紫粉量條.

四頭品 至百姓, 鞍橋禁紫檀沈香黃楊栝, 又禁飾以金綴玉, 鞍轆用牛馬皮, 鞍褥用皮, 障泥用楊竹, 銜用鐵, 鐙用木鐵, 鞞鞅用筋若麻爲絞.

四頭品女 至百姓女, 鞍橋禁紫檀沈香黃楊栝, 又禁飾以金綴玉, 鞍轆鞍坐子禁縹羅羅羅羅羅虎皮, 銜鐙禁金鍮石, 又禁飾以金銀, 障泥但用皮, 鞞鞅禁組及紫紫粉量條.”

23) 「三國史記」, 卷第 33, 雜誌 제 2, 屋舍條.

24) 藝術院, 「韓國美術史」(서울: 大韓民國藝術院), p. 211.

25) 「三國史記」, 卷第10, “禁新創佛寺, 唯許修葺, 又禁錦繡爲佛寺, 金銀爲器用, 宜令所司, 普行施行.”

26) 藝術院, 「韓國藝術概觀」, 民俗編, (서울: 大韓民國藝術院, 1975), p. 270.

身具에 대한 규정이 있었을 듯하나 별반 기록과 증거할 만한 유물이 없다.²⁷⁾

高麗에 들어와 金銀에 대한 禁制를 보면, 成宗 원년(982)에 崔承老가 上書하기를, 新羅時代의 佛像을 훼손 변형케 하고 매매하여 生業을 삼고 있으니 엄단하여 罰을 고치기를 바란다 하였고, 의복의 제도는 토풍(土風)에 따라서 사치와 검소의 중간을 얻도록 하는 것이 좋고 반드시 똑같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하였다. 前言한바는 新羅는 佛教文化가 융성하여 金銅佛을 많이 주조하여 王室과 民間의 富가 布施라는 명목으로 집중되었는데 高麗때에와서 佛像을 훼손하고 변도시켜 파는 자들이 있었던 일을 말해주는 데 이것들이 중국으로 가서 값비싼 사치품으로 바뀌어 밀무역되어 들어 오고 朝貢의 명목으로 謝恩使·正至使·聖節使가 있을 때마다 그들편에 흘러가기도 하여(遼·金·宋·元) 이것이 밀무역의 수단이 되었다. 이는 본래 金銀에 대한 禁制는 직접 국민들의 奢侈를 抑制하는데 목적이 있었다.²⁸⁾

肅宗도 金銀은 天池의 精氣이며 국가의 보배인데, 근래에 간혹한 백성이 돌래 구리(銅)을 섞어 주조한다는 데 이제부터는 流通하는 銀瓶에 모두 표인(標印)하는 것을 영구히 격식으로 하여 여기는 자는 중한죄로 처단시키라 한 바 있다.²⁹⁾ 睿宗도,

朕이 듣건데 民間의 買賣에 穀米와 銀品을 싣는바, 이것이 나쁜 까닭에 前代 以來 嚴한 法으로 禁止하였는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懲戒者를 보지 못하였으나, 이는 대개 奸猾한 무리들이 禁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利를 求하려하여 沙土를 쌀에 섞고,銅

鐵을 銀에 섞어 어리석은 백성들을 현혹하게 하니, 天地神明의 뜻을 어기고, 백성들의 貧困이 이로 연유하여 생기므로, 가히 法으로써 이를 懲戒할 것이다. 堯舜은 衣冠을 마련하자 백성들은 法을 犯하지 아니하여 刑의 措置가 必要치 않고도 比屋을 可封하였다 한다. 朕은 이를 매우 사모하니 무릇 內外의 軍民工商雜類들이 마음과 생각을 고쳐 善으로 옮겨 죄를 멀리 하면, 자연히 刑罰이 맑아지고 德教가 흡족하여 길것이니 富壽의 業과 大平의 風을 어찌 이루기 어려우랴. 이와같은 뜻을 알지 못하는 까닭으로 法을 어겨 범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처벌하며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³⁰⁾

하였고, 睿宗은 또한 服飾의 제도에 있어 상하(上下)가 뒤섞인 것은 선대(先代)적부터 정한 법이 없기 때문이며 근래에 制度를 세워 尊卑의 차례를 구별하려 하였지만 여러 신하들이 출신하여 민중을 이끌지 못해 상하의 차이가 없기를 극에 달해 백성들은 명령한 바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한다고³¹⁾ 당시 흐트러진 규범제도를 질책하였다. 高麗는 中期가 넘도록 衣冠制度가 무질서하였는지 元宗 원년(1260)에도 御史의 榜에 參上員의 의견이 맞지 아니한 자를 금했다.³²⁾

忠烈王 4년 2월부터 境內에서는 모두 元制에 따른 衣冠을 착용케 하였다.³³⁾ 이로부터 蒙古式 衣服에 開制·辮髮(Kekul)을 하였으며 특히 忠烈王 이후로 歷代君主가 元の 公主를 王後로 맞이하여 宮中生活은 많이 蒙古式을 따르게 되었다. 層閣·穹廬·氈幕(兀朵-ordo) 등이 나타나고 姑姑(Kuku-蒙古貴女の冠)의 착용도 행하였다. 高麗의 宮中에서 孛兒扎(bolzar: 許婚酒의 의미로서 姻媾合歡의 祝宴인바 蒙古의

27) 黃汲根, 前掲書, p. 196.

28) 「增補文獻備考」, 第80卷, 章服2 高麗條. 柳喜卿, 「前掲書」, p. 562.

29) 「高麗史節要」, 第6卷, 肅宗條.

30) 「高麗史」, 世家, 卷12, 睿宗條.

31) 「增補文獻備考」, 第80卷, 章服2 高麗條.

32) 「增補文獻備考」, 第79卷, 章服1 高麗條.

33) 「高麗史」, 卷 85, 忠烈王條.

“令境內皆服上國衣冠.”

중대한 儀式임)宴이 행하여졌으며, 察刺(Chara-注酒器)察渾(Chakhun-杯) 등 蒙古의 器物名도 專用되어³⁴⁾ 蒙古의 習俗이 高麗習俗에 莫大한 影響을 미쳤다. 蒙古의 遺風으로 韓國人의 本然의 服色을 잃게 한 것은 물론, 裝身具도 新羅王冠처럼 우아함이나 土着精神을 잃고서 무기력한 政治社會처럼 혼돈속에서 헤어나질 못했다. 수시로 權力層의 빈번한 規制와 禁制가 있었지만 高麗末까지도 지켜지지 못했다. 예로 31代 恭愍王 16년(1367)에도, 우리나라 君臣들의 冠服은 이미 토풍(土風)에 적당한 것으로 제정하여 상하(上下)분별있게 하여 바꿀 수 없는데도 편리한 데 따라 가볍게 고쳐서 높고 낮은 것이 섞여 분별이 없었다.³⁵⁾ 奢侈와 腐敗는 어느時代에나 沒落을 자초하였듯이 高麗末에도 金銀需要를 가히 充當할 수 없어 恭讓王 3년(1391)에만 하여도 史料에 의하면 두번이나 上書가 있었다. 이제현(李齊賢)은 “金銀·錦繡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으므로 공경(公卿)의 피복(被服)은 素緞만을 쓰게 하자 하였으며³⁶⁾ 증량방 방사량(房士良)이 지금부터는 사서인(士庶人)·공상(工商) 천례(賤隸)에게는 사라(沙羅)·능단(綾段)의 의복과 金銀·珠玉의 장식을 일체 금지시켜 奢侈한 風俗을 그치게 하고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의 구별을 엄하게 하자고 하였다.³⁷⁾ 이는 高麗는 外來品의 사용금지를 하여 아울러서 奢侈의 抑制를 도모하고 身分階級을 뚜렷히 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또한 徐 兢의 「高麗圖經」에 나타난 王은 退朝하여 便服을 입고 있을 때에는 民庶와 다름없다는 것은 韓民族이 가지는 二重的, 卽 儀章文物의 상징으로 章服을 입고 있는 계급적 구조의 본보기이기도 하다.³⁸⁾

IV. 朝鮮朝의 奢侈禁制

朝鮮은 明나라를 섬기고 있어서 歲時와 慶節에 보내는 使臣들은 반드시 金·銀을 가지고 가게 되었다. 金銀珠玉은 中國에 事大의 禮를 행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것이었다. 그러나 해마다 많은 수요를 감당키 어려웠고 國內生産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金銀珠玉에 대한 奢侈禁制는 治者의 입장에서 백성들에게 奢侈成風을 없애고 儉約의 習俗을 길러주기 위한 것이라는 면과 金銀珠玉이 우리나라의 生産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금지시켰는데 가장 큰 이유는 中國에 대한 進貢과³⁹⁾ 身分區別 때문이었다.

朝鮮朝에 와서 緋緞 眞彩와 金·銀·玉 등의 물품은 宮中에서만 사용토록 禁制를 내렸는데 최초의 일은 太祖 3년 6월이었다.

금과 은은 해마다 공물(貢物)로 바치게 되어 대기 어려운 것인데, 윗사람이나 아랫사람들이 다 통용하여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으며, 이익만 아는 무리들은 무역(貿易)을 모의하여 남몰래 국경을 넘어가서 말썽을 일으키게 되니, 그 폐해가 적지 않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사·나·능·기와 금은으로 만든 패물같은 것은 궁중에 진상하는 것과 관원들의 품대(品帶)에 소용되는 것 이외에는 의정부와 중추부이하 시민에 이르기까지 일체 금지시키고, 공사(公私)의 가옥이나 사원(寺院)에는 진채를 쓰지 못하게 하며 승지이상 이외에는 금이나 옥으로 만든 갓끈을 달지 못하게 하고, 유밀과(油蜜菓)와 사회봉(絲花鳳·금은저(金銀著)·채화초(彩花草)는 중국사신을 접대하는 연회이외에는 모두 금단하소서.

34) 金庠基, 「高麗時代史」(서울: 東國文化社, 1960), p. 680.

35) 「增補文獻備考」第79卷, 章服1 臣服 高麗條.

36) 「增補文獻備考」第79卷, 章服1 臣服 高麗條.

37) 「高麗史節要」第35卷, 恭讓王條.

38) 金東旭, 「增補韓國服飾史研究」(서울: 亞細亞文化社, 1979), p. 237.

39) 白性禮, “朝鮮朝의 禁制小考-奢侈禁制를 中心으로”, 「論文集」第4輯, (서울: 漢陽女子專門大學, 1983), p. 10.

하니 입금이 말하기를,

사·나·능·기와 금·은·주·옥은 각 품관(品官)들의 의복과 말안장과 고삐에 쓰는 등급을 다시 의논해서 보고하고, 비밀히 국경을 넘어가서 무역을 하는 자들은 물건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주범이나 공범을 모두 참형하게 하라 40)

하였다. 이 命에 좇아 都評議使司와 禮曹에서 評定하여 狀啓한 바에 의하면,

· 進上儀用·上儀用物品 외에 臣下는 金을 사용할 수 없다.

· 嘉善大夫以下 6品以上은 酒器외에는 銀을 사용할 수 없다.

· 7品이하는 酒品도 銀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品帶와 臺省員 頂子는 此限에 不在한다.

· 庶人 및 工商賤隸는 비록 有職者라도 銀·絹·斜皮를 사용할 수 없다. 그리하여 同年 10월에는 위의 조건에 따라 憲司에서 金·銀의 禁을 엄하게 申筋하였다. 41)

太宗 8년에 대사헌 남 재(南在)등이, 金과 銀은 본국의 소산이 아니므로 함부로 소비치 말도록 권하자 입금은 이말을 옳게 듣고 은병(銀瓶)을 폐지하고 銀을 쓰는 것을 禁하였다. 42) 당시에 일반 부자집에 혹시 金·銀·玉器·綾緞이 있으면 모두 관가(官家)에서 몰수하였는데, 太祖는 비록 禁物이나 수색하지 말

고 거둬들인 물건은 돌려주고, 기왕 民間에서 가지고 있는 물건은 사용케 하여, 43) 國初에는 富裕層에는 다소 상용케 하였고, 외국인에게는 金帶·銀帶를 자주내려주었으며 44) 金銀을 캐는 民戶는 구실을 면제해주었다. 45)

世宗朝 初期에도,

금·은 본국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므로, 진상하는 물건도 오히려 계속하기 어려운데 그것으로 술잔이나 밥그릇을 상하가 통용하는 것은 더욱 온당치 못한 일이니 금후로는 진상에 따른 복용(服用)·기명(器皿)·궐내에서 쓰는 술잔 및 조정의 사신을 접대하는 기명·조관(朝官)의 관대·명부(命婦)의 뒤꽂이·사대부(士大夫) 자손들의 귀고리 등을 제외하고는 일절 사용을 금하며, 소금(鎔金)이나 이금(泥金) 등속도 다 금하는데 범하는 자는 법령으로 다스리겠다. 46)

고 하였는데 禁制의 사유를 進上에 두고 백성을 설득하였다. 또한 나라에서 進上 金銀을 조달키 어려워 同王 2년 禮曹參判 하연(河演)과 光祿小卿 韓確을 明나라에 보내어 進貢品中 金銀을 빼고 土產品으로 대체해 줄것을 청하기로 하였다. 그 봉표문(奉表文)에,

소방(小邦)은 매양 정조(正朝) 진하(進賀)와 성절(聖節)과 천추절(千秋節)을 만나면, 삼가 금은기명(器皿)·저마(苧麻)·세포(細布)·인삼(人蔘)·화석(花席) 등등의 예물을 바치었습니다.

40) 「太祖實錄」第6卷, 3년 6월 己巳條.

“金銀又海歲進貢上國, 尤難繼而及上下通用, 人無定志 況見利之徒, 謀貿易僭行越境, 以生弊端, 其害不淺, 願自今紗羅綾綺及, 金銀粧飾之物, 進上服用及各官品帶分兩府以下, 至於庶人一皆禁止, 公私家舍及寺院物用眞彩, 承旨以上外不許用金玉纓子, 其油蜜果絲花鳳, 金銀着彩花草, 上國使臣燕享外亦嚴禁斷. 上曰, 紗羅綾綺金銀珠玉, 各品官服鞍轡等級, 更讓申聞, 其僭行越境與利者, 勿論錢物多少, 首從皆誅.”

41) 柳喜卿, 「韓國服飾史研究」, p. 563.

「太祖實錄」第6卷, 3년 6월條 참조.

42) 李育期, 「燃黎室記述 別集」, 第1卷,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7), p. 41

43) 「太宗實錄」第21卷, 11년 2월 壬辰條. 開城留後司承命始搜布子各戶於是官吏先之富家有禁物金銀玉器綾緞則併入官命曰玉綾路雜是禁物勿併搜之已收之物並皆還給.

44) 「太宗實錄」第23卷, 12년 10월 己巳條.

45) 「太宗實錄」第25卷, 13년 1월 申丑條.

46) 「世宗實錄」第3卷, 원년 1월 辛亥條.

“金銀, 本國不產之物, 進獻方物, 尙且難繼, 酒食器皿, 上下通用, 尤爲不便, 今後進上服用器皿, 關內酒器及朝廷使臣支應器皿, 朝官品帶命婦首飾士大夫子孫耳環外, 一皆禁用鎔金泥金, 亦旨禁斷, 犯者論以制書有違.”

신이 상고하면, 금·은은 예로부터 본국에서 생산되지 않았읍니다. 다만 원나라때에 외국 상인들이 왕래하면서 약간의 금·은이 매매되었던 것인데, 지금은 용도(用度)로 이미 거의 다 없어졌읍니다. 이제 진실로 임시 절일을 만나면, 기명이 그 수에 족하지 못하여 관계가 가볍지 않게 될것을 두려워 하오니, 삼가 바라옵건대, 황상께옵서는 금·은 기명을 면제하고 토산물로 대신 바치게 하옵소서 47)

하였다. 이후에 외교교섭으로 설득을 계속 하였다. 同王 11년 司憲府의 各種 禁止案 上疏中에도 節目이 나오는 데,

금은 본국의 소산이 아니므로 진상하는 의복과 기명(器皿), 또는 대결안의 술그릇 중국의 사신들에게 접대하는 기명과 조관(朝官)의 품대(品帶) 명부(命婦)의 수식(首飾) 이외의 기명과 금·은을 녹여 부어 만들거나 도금하는 것을 금지할 것⁴⁸⁾

과 상인(常人)들의 투혜(套鞋)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同王 12년에 계품사(計稟使) 공녕군(恭寧君) 인(裨) 부사(副使) 도통제(都統制) 원만생(元旻生)이 중국으로 부터 金·銀 공물은 면제하고 土產物로 정성껏 바칠것을 허락받았다.

同王 20년에는 高麗이래 도군(都軍)을 장교라 일컬어와 큰 고을의 향리들은 으레 서대(犀帶)· 상홀(象笏)· 옥영(玉纓)· 옥환(玉環) 등을 착용하였으나 금지시켰다.⁴⁹⁾

同王 24년에는 冠服·裝飾物에 관한 禁制를 내렸는데,

“議政府에 禮曹가 呈啓하여 今世俗의 相爭속에 效果를 얻는 것인즉, 或은 玉과 비슷한 돌 或은, 燭玉, 或은 瑪瑙·石造環子·笠纓·雲葉兒 등을 冠服의 장식으로 사용할 것과 또 帶는 角으로 된것, 或은 半角, 玳瑁 등을 사용할 것을 啓하였다.

外方 鄉吏들은 或은 玉環子 或은 玉纓·瑪瑙纓·珊瑚纓 或은 犀帶 등을 참납하게 사용하고 있어 분수에 넘치는 禮制를 혼란시키는 폐단이 있으니, 請컨대 앞으로 瑪瑙·玳瑁는 모두 금하도록 하고 羊角帶와 白玉 비슷한 石燭造玉 服飾등을 堂上외에는 금하게 하고, 銀花 白羊角帶는 2品이 상이라도 금하도록 啓하였다.

鄉吏는 犀帶·瑪瑙纓·玉環子·玉纓·珊瑚纓 등 모두 금하게 하고, 또한 鄉吏는 珊瑚纓·水精纓 및 비록 下賜받은 玳瑁라 할지라도 금하도록 하게 할것을 청하니 임금이 여기 따랐다.

나라에서는 백성들 婚姻에 紗羅綾緞·金銀珠玉·珊瑚·明珀등의 奢侈를 금하고 堂上官의 子女들에게 까지도 禁止하게 하였다.

堂上官에는 絹紬·有文緞 着用을 금하였다. 工商·賤隸의 庶人男女는 袂衣着用을 금하고 堂上官이 아니면 大紅衣 着用을 不許하였다.

工商·庶人은 勿論 儒生의 有職無職을 莫論하고 紫衣 着用을 금하였다.

堂上官외에는 平素 笠子着用을 금하고 無職者나 工商은 付竹笠·繩結笠을 着用하게 하고, 瑪瑙·琥珀·珊瑚 靑金石등의 笠纓을 堂上官외에는 일체 금하였다.⁵⁰⁾ 이

47) 『世宗實錄』, 第7卷, 2년 1월 甲子條.

“小邦每遇進賀正朝聖節千秋節謹修金銀器皿牙麻細布人簷花常等頂禮物進獻臣寮詳金銀自來本國不產只有前元時客商往來輿販到些火金銀用度今已殆盡今誠恐臨時遇節器皿不敷干係匪輕伏望聖慈許免金鏤器皿將土產物件代備進貢自爲.”

48) 『世宗實錄』, 第43卷, 11년 2月 辛巳條.“金銀, 非本國所產, 進上服用器皿, 闕內酒器, 朝廷使臣丈應器皿, 朝官品帶, 命婦首飾, 士大夫子弟耳環, 女妓首飾外, 器皿及銷泥金銀 禁止.”

49) 『世宗實錄』, 第80卷, 20년 4월 甲寅條.

50) 『世宗實錄』, 第97卷, 24년 9月 壬午條.

“議政府 據禮曹呈啓, 今世俗凡諸服飾之物 爭相 則效或以石之似玉者 或燭玉或瑪瑙, 石造環子笠纓, 雲葉兒, 以爲冠服之飾 且帶烏角者 或以羊角玳瑁爲帶, 外方鄉吏等 或玉環子或玉纓 瑪瑙纓, 珊瑚纓, 或犀帶玉, 然僭用如此越禮亂分, 實爲末使, 請自今, 瑪瑙玳瑁一皆禁斷, 羊角帶及似玉, 白石燭玉, 服飾, 堂上外亦皆禁斷, 且金及花白羊角帶, 二品以上亦禁之, 鄉吏等犀帶, 瑪瑙纓, 玉環子, 玉纓, 珊瑚纓, 並皆禁斷, 且帶金鄉吏, 珊瑚水晶, 及會受賜帶玳瑁帶從之.”

같이 裝飾物에 瑪瑙·玳瑁·琥珀 등을 금하였다. 同王 28년 5월 司憲府에 傳旨하기를 碧潼郡(碧潼郡)에서 산출하는 청옥(靑玉)을 민간에서 복용(服用)하는 것을 이미 일찌기 금하였고 그 외의 黃玉 등 各種의 玉은 모두 강을 건너서 캐는데, 무지(無知)한 백성들이 대체(大體)를 돌보지 않고 이익을 탐하여 가서 캐다가 만일 적을 만나면 작은 일이 아니다. 이제부터 各色의 玉을 대소 신료(臣僚)가 服用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라⁵¹⁾ 하고 平安道 觀察使에 諭書를 내려 무분별한 玉의 채취를 금했다. 同王 28년에는 議政府에서 服色의 詳定條件을, 眞珊瑚纓子·雲月兒·眞水精纓子·九升以上の 의복도 流品 朝士 및 有蔭子弟외에는 금하였다.⁵²⁾

睿宗朝에도 紅紫衣와 복고기조(袂交綺綃) 산호(珊瑚)·마노(瑪瑙)·호박(琥珀)·명패(明貝)·청금석(靑金石)·입영자(笠纓子)·입식삼(笠飾銀)·등자(鈴子)·황동사건(黃銅事件)·사피(斜皮)를 금했다.⁵³⁾

成宗 6년에 承政院에서 “우리나라는 國土가 마르고 민이 가난한데 習俗이 奢侈하여 이에 대한 禁制條項을 이미 大典에 갖추었고 또한 수차에 걸쳐 儉約에 따르는 傳教를 내린과 있으나 朴素歸厚에 이르지 못하고 다 부어 外國產의 물건만 숭상하고 赴京하는 사람마다 綵緞과 器物을 市에 사들여 말에 실어 輪轉하니 驛路가 稠幣하다⁵⁴⁾ 고 하였고 同王 8년에도 議政府와 전지하기를, “金銀珠玉의 금지와 儀章·服色의 제도가 《대전(大典)》에 실려있는 것은 사참(奢僭)을 막아 節儉을 숭상하고, 貴賤을 변별(辨別)하여 禮化를 도모

케 하기 위함인데, 근자에 들으니, 훈척(勳戚)·귀근(貴近)이 먼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고 여항(閭巷)의 소민(小民)도 또한 서로 쫓아 분수에 지나친 사치(奢靡)를 하고, 그중에 거상(巨商) 부고(富賈)는 제멋대로 하여 거리낌이 없는 것이 습관이 되어 풍속을 이루어서……지금부터 법령(式命)에 어긋남이 있는 것은 밝게 규찰(糾察)을 가하여 엄히 금단(禁斷)을 행하라⁵⁵⁾며 당시 권력층의 무분별한 奢侈와 당시의 폐해를 직접 임금이 지적한 것을 보면 聖君으로서 자질을 읽으면서, 近年의 世德와 비교되는 바가 크다. 당시에도 奢侈는 社會에 끼친 習俗의 폐해로 民間에 끼치는 부작용이 컸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렇지만 폐해의식에 사로잡혀 金銀採取가 禁制條目으로 못박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전국에 걸쳐서 鑛山 開發과 採取가 시행되었지만 미약한 양에 불과하였다.

廢朝의 象徴인 燕山君代에는 임금이 奢侈와 遙逸에 빠져있어 특히 關內의 金銀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다. 王妃愼氏를 위해 金鼎을 주조할 정도였다. 많은 匠人을 關內에서 使役을 시켰는데, 이 또한 임금이 奇巧과 淫巧를 즐겨 각종의 戲玩之物을 외부 물래 제조할 목적이었다. 당시 尙衣院의 주관하에 關內에서 진행되었던 수백명 匠人들의 工役은 주로 金銀珠玉 등 貴金屬의 細工作業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關內工役이 확대될 수록 제철원료 조달이 심각해졌다. 이 때문에 燕山君은 일찌기 金銀珠玉類의 國內鑛山開發에 적극성을 띠고 있었다. 燕山君 7, 8년경부터 채굴되기 시작한 珠玉類의 鑛石은 白水晶·紫水晶·白玉·靑玉·白瑪瑙·火瑪瑙·

51) 「世宗實錄」第112卷, 28년 5월 辛卯條.

白性體, “朝鮮朝의 禁制小考,” p.10.

“傳旨司憲府, 碧潼郡產出靑玉, 民間服用, 己曾禁之 其餘黃玉等各色, 皆越江採取, 無知之民, 不顧大體, 貪利往採 若遇彼賊, 非小事也, 自今各色玉, 大小臣僚服用, 一切通禁, 又下諭書于平安道觀察使以禁之.”

52) 「世宗實錄」第112卷, 28년 5월 壬辰條.

53) 「睿宗實錄」, 원년, 7월 庚寅條.

54) 「成宗實錄」第57卷, 6년 7월

“我國土府貧而貧奢僭, 禁制條件, 己具大典, 且屢降從儉之物, 猶不反朴歸厚, 競尙異土之物, 赴京者, 盡市絲緞器物, 馬載輪轉, 驛路稠幣.

55) 「成宗實錄」第77卷, 8년 2월 壬子條.

“傳旨議政府曰, 金銀珠玉之金儀章服色之制載在 大典所以杜奢僭而節儉辨貴賤而 禮化也比間勳戚貴近 先自壞法閭巷小民亦相率而侈靡 其中巨商富賈情無忌習以俗至 … 自今有乖式令者明加糾察痛行禁斷.”

天二靑石 등으로서 楊州 檀巖寺의 紫水晶 慶州의 白水晶·火瑪瑙·白瑪瑙, 端州의 靑玉, 楊州의 白玉이 유명하였다. 同王 9년 7월에 高安郡正精이 光陵山麓에서 白玉 3塊를 採進한 경우처럼 포상을 노리는 자들의 사사로운 採進도 없지 않았다. 그밖에도 燕山君은 對明輸入商品인 紗羅綾緞마저 국내에서 생산할 목적으로 同王 10년 5월 通織司를 설치하고 匠人들로 직조하게 하여 宮中需要品을 자체생산하려 하였다. 이러한 의욕은 金銀問題에서도 다름바 없었다.⁵⁶⁾

中宗朝에는 韓國人의 獨創의인 首飾品이었던 갖의 규제도 보이는데 갖은, 종립(禁笠)에 있어서는 당상관 외에는 모두 금하고, 부죽립(附竹笠)·승립(繩笠)·나과립(羅裏笠)에 있어서는 학생과 서민들과 중상들이 쓰지 못하게 하고, 瑪瑙·琥珀·靑金石·갓끈과 銀粧刀는 당상관외에는 일체 금하였다.⁵⁷⁾ 머리에서 발끝까지 몸에 부착하거나 장식을 하는 것은 어느것 하나 禁制를 벗어난 것이 없었다. 韓國人의 朝鮮時代 裝身具란 規制된 制約속에서 피어난 꽃, 韓國人의 造形藝術의 꽃이었다. 白性禮가 朝鮮朝 服飾禁制를 ①身分階級的의 側面, ②奢侈規制의 側面 ③事大主義의 側面에서 보았듯이⁵⁸⁾ 朝鮮朝 裝身具 또한 위의 세가지 요인이 크게 影響을 끼쳤지만, 앞서 世宗 12년(1430)高麗時代이래 禮物中 가장 곤란한 대상이었던 金·銀의 事大歲貢을 면제받기에 이른 결과 得에 앞서 失도 있었으니, 鑛業開發의 소극화정책으로 國內에서는 明요구가 두려워 採金을 금하고 국내의 需要를 明과 日本에서 수입하여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貴金屬技術의 吹鍊加工技術 뿐만 아니라 金屬製鍊技術마저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 곧 成宗代까지 약 반세기 동안

金·銀의 채굴은 거의 정지되고 朝鮮의 鑛業은 구리의 채굴정도에 머무르고 있었다.⁵⁹⁾

V. 裝身具와 材料別 禁制

사랑을 받았던 裝身具일수록 豪奢가 심하여 禁制品目속에 들어간다. 本 研究에서는 冠服規定과 佩用法에 따른 規制보다는 文獻資料에 나타난 裝身具들을 위주로 調査하였다. 따라서 몇종의 裝身具에 관한 個別的 禁制事項을 살펴보면, 노리개는 韓國人의 裝身具中 아마도 가장 사랑받는 裝身具일 것이다. 朝鮮時代에는 하나의 無言의 身分表示였으며 男便의 當당한 위세를 婦人이 밖으로 들어낼 수 있는 象徴物이기도 했다. 佩用은 원칙적으로 身分에 따라 엄격히 구분되었으며 宮中에서도 아무나 찰 수 없었다. ①王子나 世子嬪 또는 正一品 品階를 받은 內命婦(嬪, 王의 後宮) ②外命婦는 公主·翁主 또는 王子 君夫人등에 한정된다. ③그외에도 밖에서 入內할 때 宗親 婦女들이나 兩班婦人들도 머리에 찹지를 하고 이 노리개를 차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不文律이었다. 純金製는 王族에게만 한하였고, 이들 노리개가 비싼 것은 집 한채의 가격이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부유층에서는 花冠·簇頭里·비녀와 아울러 여러개 장만하여 재산과 지위를 뽐냈다. 원래는 儀禮用으로 代를 물려가며 佩用하는 것이었으나 朝鮮後期에 이르러 奢侈風潮가 만연되고 사회 규율이 해이해진 이후 노리개 佩用이 보편적인 裝飾手段으로 인식되어 여러가지 폐해를 낳기도 했다.⁶⁰⁾

簇頭里는 太宗 12년 6월 丁卯에는 簇頭里에 비단을 사용하는 것을 금했고,⁶¹⁾ 英祖 32년에는 士族婦女子

56) 柳承宙, "朝鮮前期後半의 銀鑛業研究," 「震壇學報」, 第55號, (서울: 震壇學會, 1983), pp.21~23.

57) 孫敬子·金英淑, 「韓國服飾史資料集」, II, (서울: 敎文社, 1982), p. 66.
「中宗實錄」17년 8월 乙酉條 참조.

58) 白性禮, "朝鮮朝의 禁制小考-服色의 禁制를 中心으로," 「論文集」, 第2輯, (서울: 漢陽女子專門大學, 1981), p.8.

59) 全相運, 「韓國科學技術史」, (서울: 南海文化社, 1983), p.267.

60) 全完吉, 「韓國化粧文化史」, (서울: 悅話堂, 1987), p.139.

金用淑, "朝鮮宮中風俗의 研究," 博士學位論文, (서울: 淑明女子大學校, 1974), p.86.

61) 石宙善., 前掲書 p. 67.

들의 加髻을 금하고, 簇頭里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加髻로 簇頭里를 대신하면서 화려한 首飾은 일체 금하였다.⁶²⁾ 더우기 婚家에서 쓰기 위하여 七寶簇頭里를 세우고 세내는 것도 금하였다. 「秋官志」에도 “이번의 금제는 오직 사치를 물리치려는 임금의 뜻에서 나온 것인데 큰머리 대신 족두리를 대용(代用)한다는 핑계로 칠보머리와 같은 것으로 전과같이 장식하여 쓴다면 제도를 고쳤다는 이름만 있고 겸소한 것을 밝히는 실지는 없는 것이된다. 모든 머리에 꾸미는 금옥주패(金玉珠貝)와 꾸민(唐紵) 진주투심(眞珠套心)의 등속을 일체 금한다.⁶³⁾ 고 하였다. 正祖 12년에도 簇頭里에 金玉을 못달게 하였으며⁶⁴⁾ 同王 17년에도 民間에서 簇頭里에 七寶首飾을 다시 사용하므로 加髻 금하는 법을 다시 천명하였다.⁶⁵⁾

指環은 顯宗 11년에 金銀珠玉의 指環을 사용하는 자는 論斷하되 姣生·醫女는 금하지 말도록 하였다.⁶⁶⁾

金銀珠玉으로 만들어진 비너는 上流階層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며 庶民層 婦女는 木·角·骨 등으로 된 비너만 사용할 수 있었다.⁶⁷⁾ 仁祖 15년에 禮曹에서 禁制를 정해 알리는 가운데, 婦女 首飾中 金鳳釵·珠細·圓假鬢을 사용치 못한다하여 金으로 만든 鳳裝飾의 비너를 사용치 못하게 하였다.⁶⁸⁾

粧刀는 燕山君은 은장도자(銀粧刀子)는 단지 서민에게만 금할 것이며 하였고,⁶⁹⁾ 顯宗은 儒生雜職 및 庶人男女의 銀粧刀를 차는 자는 論罪도록 하였다.⁷⁰⁾

귀걸이는 宣祖때 男子가 귀고리를 차는 것은 오랑캐 풍속이라 하여 금지시켰다.⁷¹⁾

임영(笠纓)은 堂上官(堂上官) 외에는 마노(瑪瑙) 호박(琥珀)·명박(明珀)·산호(珊瑚)·청금석(靑金石)의 사용을 금했으며, 笠纓(笠纓)의 雲月兒(雲月兒)⁷²⁾ 는 大君(大君)은 金을 사용하고 堂上官(堂上官) 이상은 銀을 사용하고 大白玉(大白玉), 칠보(七寶)·교로금옥(交露金玉)의 雲月兒(雲月兒)⁷³⁾ 와 주홍황단(朱紅黃丹)의 마침(馬粘)과 백양각(白羊角)의 삼대(鈿帶)는 금했다.⁷⁴⁾

朝鮮朝 女人들의 首飾 및 裝身具는 오랜동안 시시비비의 대상이 되었고 規制 또는 禁止를 당하여 왔다. 樣式차제도 社會的規範과 奢侈防止를 이유로 제약을 받아서 발전에 저해적인 요소가 되었다.

朝鮮朝의 禁制項目에 있는 寶石類別 禁制와 성질을 「經國大典」譯註本에서 알아보면,⁷⁵⁾

·玉:國內의 產地는 碧潼·淸州·金浦 등지에 한정되어 그 양이 御用에 충족될 정도여서 私用을 금지하는 條令이 거듭하다가 世宗 30년(1448) 5월 위 지역의

62) 孫敬子·金英淑, 「韓國服飾史資料集」, II, p. 398.

「正祖實錄」12년 10월 辛卯條 참조.

63) 孫敬子·金英淑, 「韓國服飾史資料集」, p. 65. 「秋官志」참조

“今止禁制, 直出於祛侈之聖意, 悉以代用簇頭里, 如七寶之類, 如前飾用, 則有改制之名, 無昭儉之實也, 凡係 首飾金玉, 珠貝及眞珠唐紵套心之屬, 一併禁斷.”

64) 上揭書, p. 398. 「正祖實錄」12년 10월 辛卯條 참조.

65) 上揭書, p. 663. 「增補文獻備考」참조.

66) 柳喜卿, 前揭書, p. 567.

67) 柳喜卿, 「韓國服飾文化史」, p. 282.

68) 石宙善, 前揭書 p. 567.

「仁祖實錄」卷34, 15년 5월條.

69) 「燕山君日記」第29卷, 4년6월 庚辰條.

70) 石宙善, 前揭書, p. 567.

71) 李肯翊, 「燃黎室記述別集」, 卷之十三, 政教典故.

72) 「大典後續錄」卷之三, 禮典, 禁制條.

73) 갓(笠)을 장식하는 것의 하나 金·銀·玉·七寶등으로 하였음.

74) 孫敬子·金英淑, 「韓國服飾資料集」, p. 362. 「世祖實錄」7년 2월丙子條참조.

“傳旨司憲府曰, 笠纓雲月兒大君用金, 堂上官以上用銀, 禁大白玉·七寶·交露金玉·雲月兒朱紅黃丹馬粘白羊角鈿帶.”

75) 「譯註 經國大典」, 註譯編(서울: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6), p. 364. P. 706.

玉을 사사로이 採取하여 매매하는 자는 「大明律」의 龍鳳文을 僭用違禁하는 자의 律을 적용하여 官民을 막론하고 杖一百 從三年의 형에 처하고, 工匠은 杖一百으로 痛懲한다고 하였다.⁷⁶⁾

• 珊瑚: 갓끈(笠纓)의 장식용으로 사용하였다. 世宗 11년(1429) 2월에 工商賤隸가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⁷⁷⁾ 世宗 24년 9월에는 鄉吏들이,⁷⁸⁾ 睿宗 원년(1469)에 庶인들이⁷⁹⁾ 각각 珊瑚纓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였다.

• 瑪瑙: 차들의 하나로 樹脂狀 광택을 내며 간간이 다른 광물이 침투하여 고운 무늬를 낸다. 朝鮮 초기에는 玉類로 간주하고 무늬가 馬瑙와 같다고 하여 瑪瑙라고 하였다고 하며 西域産이 많았다. 世宗 24년에 鄉吏들이 瑪瑙纓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⁸⁰⁾ 睿宗 원년 7월에 庶人의 사용금지도 명시하였다.

• 琥珀: 누른 빛의 투명한 광택이 나는 광물로 睿宗 원년 7월에 庶人이 갓끈, 갓 장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였다.⁸¹⁾ 松脂가 땅속에 묻혀 천년이 지나면 茯苓이 되고 또 천년이 지나 琥珀이 되며 麗賓國에서 이것이 산출되는 것으로 알았다.

• 明珀: 琥珀의 일종으로 明貝라고도 하며 睿宗 원년 7월에 庶人이 갓끈·갓 장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였다.

• 靑金石: 睿宗 원년 7월에 庶人이 갓끈·갓 장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 燐靑玉: 燐玉(燐造玉·藥玉)의 일종으로 돌가루를 구워서 玉 모양으로 만든 것. 燐靑玉·燐白玉·燐水精 등으로 불렸다. 燐造玉은 世宗 때 당상관 이의에는 사용을 금하였으나⁸²⁾ 「經國大典」에는 3품이상

은 燐靑玉, 4품이하는 燐白玉을 佩玉으로 사용케 하였다.

• 燐白玉·燐造玉(燐玉:藥玉)의 일종. 돌가루를 구워서 白玉 모양으로 만든 것. 4品以下官의 佩玉으로 사용되었다.

VI. 婚姻奢侈와 罰則

婚需品の 奢侈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말쟁이 많았던 것 같다. 婚需品에는 의당 값비싼 禮緞과 佩物이 따랐는데 적으면 상대편의 집안에 체면이 깎이는 일이고 소홀하였을 경우에는 무시한 처사라고 하여, 婚姻이 成事되지 못하는 폐해도 적지 않았으니 婚姻奢侈는 너무나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習俗이다. 韓國人은 結婚만 하면 葬事지낼 일부러 걱정을 하고, 子息을 낳으면 結婚시킬 걱정부터 하였던 것이다.

男兒 先好思想이 뚜렷하였던 朝鮮朝에는, 女兒를 둔 부모는 “딸자식 낳으면 梧桐나무부터 심는다”, “사위자식 개자식”, “사위는 백년손님” 등으로 욕도 하고 원망도 하며 딸을 시집보내고 나서도 항상 조심과 걱정을 가슴에 안고 지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호된 시집살이에서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婚姻時 禮物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習俗的인 문제는 차후로 미루고 「朝鮮王朝實錄」을 중심으로 婚姻奢侈에 따른 禁制만을, 本稿에서는 婚姻奢侈禁制의 의도와 실천내역을 把握코자 하였다.

朝鮮朝 初期인 太宗 18년에는 禮曹에서 婚姻의 事宜를 올린중에 “혼인(婚姻)하는 사람이 공공연히 은대(銀帶)를 띠는 정해진 제도에 어긋남이 있으니 이제부터 본래 은대를 띠지 못하는 자는 그 시직(時職)·

76) 「世宗實錄」第120卷, 30년 5월 辛卯條.

77) 「世宗實錄」第43卷, 11년 2월 辛巳條.

78) 「世宗實錄」第97卷, 24년 9월 壬午條.

79) 「睿宗實錄」第6卷, 1년 7월 庚寅條.

80) 「世宗實錄」第97卷, 24년 9월 壬午條.

81) 「睿宗實錄」第6卷, 1년 7월 庚寅條.

82) 「世宗實錄」第93卷, 24년 9월 壬午條.

산직(散職)에 따라 각대(角帶)·도아(條兒)를 사용하리⁸³⁾ 하였고 朝鮮初期에도 婚需品을 갖추지 못해 婚期를 놓치는 일은 國家之大事라기에 앞서 人倫之大事의 시기를 놓치는 일이 허다했으니, 世宗 9년에 司諫院에서 “대궐의 안밖에서 金銀같은 것을 일체 금지하여 검소한 기풍을 진작시키면 婚姻을 맞을 집안에서도 異方의 물건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며 물건을 갖추지 못한다하여 婚期를 놓치는 일이 없을 것”이라 진언하였고, 同王 30년 「受教輯錄」 5권에도 婚姻하는 데 禮物를 제한하여 媳家에서 신부를 맞이할 酒饗을 사치롭게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新婦에게 주는 禮物에 金銀珠玉과 비단옷을 착용하는 자는 그 家長을 벌하도록 하였다.⁸⁴⁾ 「靑莊館全書」에서는 “딸을 시집보낼 때 혼수를 너무 사치스럽게 마련하여 심지어는 家産을 탕진하는 경우까지 있는데 이것은 딸을 지나치게 사랑하여 그 사치를 조장하는 처사로서 家長을 졸라 제멋대로 婚需를 갖추므로 결국 조상의 재산을 모두 팔아버려 재사를 받들지 못하게 되니 한 가지 일을 잘못 거행하여 세가지 악을 동시에 범하게 되는 일⁸⁵⁾”이라 하였다.

「續大典」에는 서가(婿家)에서는 채단(綵段) 금은기명(金銀器名)을 함룡(函籠)에 담아서 먼저 가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아니하면 사람들이 모두 업신여긴다⁸⁶⁾ 고 成宗 3년때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으며 燕山君 8년에도 司憲府의 啓에 富家와 大族의 婚需와 치장의 奢侈가 극심하여 갖의 裝飾에 金銀珠玉을 쓰는 사람과 산호(珊瑚)·유리(瑠璃)·명박(明珀)을 사용하는 사람과 동련(同牢宴) 외에도 유밀과(油密

果)를 사용하는 사람과 시부모를 빌매 紗羅綾緞 의복과 金銀珠玉·佩物을 갖추어 주는 사람은 堂上官 자녀를 논할 것 없이 일체 모두를 금단시키며 혼인날에는 이속(吏屬)이나 의녀(醫女)를 보내 감찰케 하였다.⁸⁷⁾

燕山君으로부터 2세기 가량이 지난 肅宗朝 41년에 도 婚姻奢侈는 지속되었으니,

근래에 여항(閭巷)이 사치가 극도에 이르러 婚禮에는 반드시 침장(寢帳)을 사용하되 어떤 사람은 금수(錦繡)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피(麗皮)를 사용하는 것은 고례(古禮)인데 지금은 회복할 수 없고 현혼(玄纁) 2단을 사용함은 나라의 풍속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오직 저 여염의 부자는 금은(金銀)·주패(珠貝)·사능(紗綾)의 무치가 반드시 함(函)에 가득찬 뒤에 그만두며, 비록 이보다 아래 드는 자라도 주면(紬綿)을 사용하는 등 흉내내어 많은 것을 자랑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이것을 장만할 힘이 없어 인륜대사인 혼기를 놓치게 되고 혹은 죽을 때까지 장가를 들지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청컨대 지금부터는 혼례(婚禮)에 용장(用帳)과 채패(齊幣)가 들어상 수가 넘는 禁條에 첨록(添錄)하여 일체 금단(禁斷) 하소서.”⁸⁸⁾

하였다. 朝鮮末期까지 奢侈의 혼란은 계속된 것이다. 더우기 王室에서는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예로 純祖 19년에 있었던 王世子(孝明世子 翼宗)嘉禮때 中國에서 貿易한 寶石類는 純金製品를 비롯해 금강석·옥·비취·자만호·공작석·산호·밀화·서각·금패·금도금 제품등으로 반지만 153쌍이며 國家의 1년 예산 규모 정도를 호화로운 寶石類 구입에 썼으니

83) 「太宗實錄」第35卷, 18년 5월 壬子條.

84) 石宙善, 前掲書, p. 141.

85) 「靑莊館全書」卷之三十, 士小節 第六 婦儀一服食

86) 「成宗實錄」第14卷, 3년 1월 己未條.

87) 「燕山君日記」第46卷, 8년 6월 戊申條.

88) 孫敬子·金英淑 「韓國服飾史資料集」p. 282.

「肅宗實錄」41년 9월 戊戌條 참조.

“憲府論近來閭巷, 奢侈窮極, 婚禮必用寢帳 或以錦繡 且麗皮古禮 而玄纁二段, 國俗同然, 惟彼閭漢富者, 則銀金珠見紗綾之屬, 必盈函而後已. 雖下於此者, 亦以紬綿效嘖誇多, 貧者無力辨此. 大倫失時, 或有終身不得聚者, 請自今婚禮用荒幣過數二者, 添錄禁條. 一切禁斷.”

아무리 외인들의 경우라 하더라도 지나쳐 奢侈의 극치를 보는 듯하다.⁸⁹⁾

金·銀의 使用과 婚禮에 따른 奢侈의 罰則事項을 「經國大典」⁹⁰⁾ 「大典會通」⁹¹⁾ 등에 실린 바에 따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文獻에는 金銀이외의 禁制도 묶어서 罰則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위의 사항에 관련된 罰則만을 추려보았다.

· 禁物에 潛賣하는 자는(闊細布·綵紋席·厚經·貂皮·土貂皮·海獺皮 따위를 兩界의 浦所와 客館에서 파는 자라도 금지하고 아래에도 이와 같다). 杖一百度 從三年하며 罪가 중한 자(鐵物·牛馬·金銀珠玉·寶石·焰硝·軍器 따위를 兩界의 浦所와 客館에서 파는 자)는 絞한다.(付屬한 자는 모두 一等을 減한다) — 經國大典·大典會通

· 大小人員으로 酒器이외에 金·銀·靑畫白磁器를 사용하는 자는 모두 杖八十에 처한다(庶人 男女는 紅紫衣·紫帶·金·銀·靑畫磁器·交椅硝·玉·珊瑚·瑪瑙·琥珀·明珀·靑金石과 黃銅鞍飾·鍍鎧子·斜皮 모두 금지한다) — 經國·大會

· 堂下官 이하로서 婚姻하는 사람이 紗·羅·綾·段·絨을 사용한 자 土族의 婦女·兒童·京妓는 금하지 아니한다)는 杖八十의 刑에 처한다. — 經國·大會

· 婚禮 때에는 職衛이 있는 사람이면 時任이거나 散官이거나 물론하고 紗帽와 品帶를 착용하는 것을 허락하며 職衛이 없는 자는 笠을 착용하고 條帶를 띤다. — 經國.

· 燕京에 가는 사람으로서 人蔘·銀貨를 挾持한 자는 국경에서 斬하고 八包定數 이외에 가지고 간 자는 一律로 論罪하고,

銀貨를 먼저 보내어 灣上에 寄置한 자는 強盜律에 의하여 論罪하고 寄置함을 받은 자와 알고도 告하지 아니한 자는 모두 杖一百度, 流三千里하며,

商賈로서 物貨를 사사로서 付託하여 中國物件을 貿易하는 자와 寄置함을 받은 자는 杖一百度, 從三年하되 物貨가 20 貫을 차지 못하면 一等을 감하고,

我國境에서 禁物을 潛賣하는 자는 死刑을 減하여 定配한다. — 經國·續大典.

· 土族의 婦女로서 服着은 그 夫의 爵品에 의하는 이외에 大緞·錦繡·鳳釵·金玉釵·珠細·假鬢을 착용하는 자(오직 新婦는 금하지 아니한다) 紗·綾·紬를 물론하고 대개 有紋으로 된 것은 일체 엄금하되 犯하는 자는 市民과 아울러 一律로 시행하고 譯官·商賈는 灣府에서 먼저 稟示하고 나중에 狀聞하며 物件은 柵門外에서 불질러 버린다. — 受教輯錄·大會.

· 紗羅綾段·金銀珠玉·珊瑚·明珀·瑪瑙 등의 奢侈品의 堂上官의 여자임을 막론하고 일체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세의 율로 논한다. — 大典續錄.

· 堂下官으로서 馬鞍에 銀入絲를 사용하는 자는 모두 엄금하여 罪를 처단한다. — 大會.

Ⅶ. 結 論

奢侈란 貴族層의 規制이지 庶民層에는 무관하였다.

馬韓時代에는 金銀이나 寶石과 錦繡를 보배로 생각하지 않았었다. 高句麗에서는 葬死지낼 때 厚葬하는 習俗이 있어 結婚하자마자 送事를 걱정할 정도로 奢侈가 심해 奢侈의 시작은 高句麗 때 부터인 듯하다. 高句麗는 東明王 10년(B.C 28)에 庶人은 문채있는 옷과 비단옷의 착용을 금했고 百濟는 古爾王 27년(260)에 공복을 정하고 三國中 제일 먼저 服色制度를 정하였다.

新羅는 興德王 9년 禁令을 내려 累年間의 冨害와 貴族들의 奢侈를 막고 王族들 사이에 있던 下剋上의 풍조와 新進豪族의 상승을 막아 기울어지려는 社稷을 일으켜 세우려 하였으나, 기강을 바로 잡지 못하였다. 이때가 新羅의 멸망 80년 전이었다. 興德王 때 禁令을 내리기 전 公服制度를 실시할 무렵 階級에 따라 금관·조영 등을 사용규정을 먼저 지었는데 新羅의 裝身具 禁制는 사실상 法興王 때부터 시행된 것이다. 新羅는 髀骨을 제외하고 服裝이나 裝身具에 제한금지를 하였

89) 金用淑, 前掲論文, pp.208~18.

90) 「經國大典」, (서울: 法制處, 1981)

91) 「大典會通」, (서울: 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1975)

으며, 一般器物도 金銀製品들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期末에 이를수록 禁制事項이 늘어갔고, 逸聖尼師金 11년 2월에 처음 民間에서 金銀珠玉의 사용을 금하였다. 古代社會의 禁制의 내면적 의도는 奢侈禁壓 보다 尊卑의 구별에 있었다.

高麗의 太祖는 新羅의 舊制를 그대로 쓰다가 後周人 雙翼의 진언에 따라 唐制에서 발전된 後周制度를 채용한 것으로 믿어진다. 新羅의 禁令은 高麗에 그대로 전승되었으며 高麗는 光宗때의 四色公服으로 부터 毅宗때의 詳定禮文, 元代服飾의 強要와 制限 등이 禁制의 밑바탕이 되었다. 光宗 7년(956) 百官公服을 정하고 11년 四色公服을 제정하였으니 冠帶 등 裝身具 規制도 있었을 듯하다. 그렇지만 기록과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金·銀의 禁制는 成宗 원년(982)에 처음 나타나며 肅宗·睿宗도 尊卑의 구별을 위하여 金銀과 服飾規制를 하였다. 忠烈王 4년(1260) 2월부터 元制에 따른 衣冠을 착용토록 하여 蒙古의 習俗이 宮中과 民間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統一新羅까지만 해도 裝身具는 貴族層에서만 사용하였는데 高麗에 와서 職이 없는 庶民이라도 富裕하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蒙古의 막강한 영향으로 傳統的 裝身具는 제멋을 잃게 되었다. 高麗는 權力層에 빈번한 規制와 禁制를 내렸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고, 이러한 禁制背景은 外來品の 사용금지와 奢侈禁制, 身分階級을 명확히 할 목적이었다.

朝鮮時代는 金銀의 採鑛이 미약하기도 하였지만, 中國에 金銀은 本國의 생산이 아니니 進上品中 金銀대신 土產物로 대체해 줄것을 청하였는데, 高麗이래 수차의 외교교섭이 성공하여 世宗 12년에는 金銀의 事大歲貢을 면제받게 되었다. 이 결과 得도 있었으나 失도 있었으니 鑛業開發의 소극화 정책으로 明의 요구가 두려워 採金을 금한 탓으로 貴金屬 뿐만 아니라 金屬製鍊技術마저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成宗때 까지 金銀採屈은 정지되었고 鑛業은 구리채굴 정도에 머문 실정이었다. 朝鮮의 裝身具란 社會的인 規制와 禁制속에 피어난 工藝의 꽃이었다.

朝鮮의 최초 禁制는 太祖 3년 6월에 내린 것이다.

朝鮮時代의 주된 禁制內容을 들면,

- 紗羅綾段·金銀珠玉·珊瑚·瑪瑙·明珀 등의 사치품을 堂上官의 여자임을 막론하고 일체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 그 家長은 제세의 律로서 논한다.

- 紗羅綾器·金銀佩物은 進上用과 官員들의 品帶· 禮內에서 쓰는 酒器·使臣들의 접대용 器皿·命婦의 首飾·士大夫子孫의 귀고리 등을 제외하고는 金銀使用을 금지하였다.

- 庶人 및 工商賤隸는 비록 有職者라도 銀·絹·斜皮를 사용할 수 없다.

- 婚姻에는 紗羅綾段·金銀珠玉·珊瑚·瑪瑙·明珀의 奢侈를 백성은 물론 堂上官 자녀들도 금지하였다.

- 鄉吏들은 犀帶·象笏·瑪瑙纓·玉纓·珊瑚纓·水精纓·下賜받은 玳瑁라도 금하였다.

- 비밀리 國境을 넘어가서 貿易하는 자들은 모두 참형이었다.

文獻資料에 나타난 禁制에 들어있는 裝身具는 비녀·노리개·족두리·지환·귀걸이·粧刀·笠纓·笠飾·品帶·笏·木箴 등이었다.

또한 婚需奢侈도 심해 婚需品을 마련하지 못해 婚期를 놓치는 일이 많아 禮物에 金銀珠玉을 쓰는 家長은 罰을 받았으며, 婚需奢侈로 家産을 탕진하는 일도 많아서 나라에서는 婚姻날 이속(吏屬)이나 의녀(醫女)를 보내 감찰케 하였다. 廢朝 燕山君같은 경우 지나친 奢侈와 遙逸에 빠져 金銀需要가 급증하였고 鑛山開發에도 적극적이었던 것은 특이한 일이었다. 사실 奢侈는 훈척(勳戚)이나 귀근(貴近)이 먼저 법을 무너뜨리고, 富裕한 백성들은 분수에 넘치게 奢侈를 하였으며 巨商은 제멋대로였다. 더우기 王室에서 奢侈는 끊임이 없었다.

이같은 裝身具의 禁制속에서 항상 여인들에게 忍從의 美를 요구하였던 儒敎의 社會狀況은 어쩌면 한뼘한뼘씩 위어가는 忍苦의 세월속에 刺繡工藝를 더욱 발전시켰는지 모른다. 외면적으로 朝鮮의 奢侈禁制는 奢侈成風을 없애고 儉約의 習俗을 가르며 金銀珠玉이 우리나라 所産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금지시켰지만 이유는 中國에 대한 進貢과 身分區別 때문이었다.

參 考 文 獻

- 「舊唐書」.
- 陳壽. 「三國志」.
- 金富軾. 「三國史記」.
- 徐兢. 「高麗圖經」.
- 金宗瑞. 「高麗史節要」.
- 「經國大典」.
- 「譯註 經國大典」.
- 「大典續錄」.
- 「大典後續錄」.
- 「續大典」.
- 李翼. 「星湖僊說」.
- 「增補文獻備考」.
- 李德懋. 「青莊館全書」.
- 「大典會通」.
- 李肯翊. 「燃藜室記錄」.
- 朝鮮王朝實錄. 「太祖實錄」.
- 「太宗實錄」.
- 「世宗實錄」.
- 「睿宗實錄」.
- 「成宗實錄」.
- 「燕山君日記」.
- 「中宗實錄」.
- 「正祖實錄」.
- 金東旭. 「增補韓國服飾史研究」.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9.
- 金庠基. 「高麗時代史」. 서울: 東國文化社, 1960.
- 맹인재. 「한국의 민속공예」.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9.
- 石宙善. 「韓國服飾史」. 서울: 寶晉齋, 1986.
- 孫敬子. 金英淑. 「韓國服飾史資料集」, I~III. 서울: 教文社, 1982.
- 藝術院. 「韓國藝術概觀」. 民俗編. 서울: 大韓國藝術院, 1975.
- 藝術院. 「韓國美術史」. 서울: 大韓國藝術院, 1984.
- 柳喜卿. 「韓國服飾史 研究」. 서울: 梨花女子大學校出版部, 1977.
- 柳喜卿. 「韓國服飾文化史」. 서울: 教文社, 1984.
- 全相運. 「韓國科學技術史」. 서울: 南海文化社, 1983.
- 全完吉. 「韓國化粧文化史」. 서울: 悅話堂, 1987.
- 李瑄根外. 「韓國民俗思想大系」. 2. 古代編. 서울: 螢雪出版社, 1982.
- 李宗碩. 「韓國의 木工藝」. 서울: 悅話堂, 1986.
- 黃五根. 「韓國裝身具史」. 서울: 瑞文堂, 1972.

- 金用淑. “李朝宮中風俗의 研究”. 博士學位論文. 서울: 淑明女子大學校, 1974.
- 白性禮. “朝鮮朝의 禁制小考—服色의 禁制를 中心으로”. 「論文集」, 第2輯. 서울: 漢陽女子專門大學, 1981.
- 白性禮. “朝鮮朝의 禁制小考—奢侈禁制를 中心으로”. 「論文集」, 第4輯. 서울: 漢陽女子專門大學, 1983.
- 柳承宙. “朝鮮前期後半의 金鑲業研究”. 「震壇學會」, 第55號. 서울: 震壇學會, 1983.
- 柳宗悅. 「韓國과 그 藝術」. 李大源譯. 서울: 知識產業社, 1974.